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신중사용은 대세이다



이인호 국가 항생제 내성안전관리사업 전문위원

서론

미국 양돈 수의사회(AASV)에서는 “돼지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면 정확한 진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일단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최적의 치료효과를 내면서, 내성은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를 수의사가 서비스할 수 있다고” 2006 Allen D Leman Swine Conference Proceeding 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 중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신중사용(Prudent Uses)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자,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자가 진료를 생산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산현장에서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신중사용이 정착화 되고 있는 선진 축산국가에 비해서 질병의 발생율과 폐사율이 월등하게 높은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직도 일부에서 수의사처방에 의한 요주의 약품의 사용지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후진적인 사고방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사 처방에 의한 항생제를 포함한 요주의약품의 선정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게다가 한술 더떠서, “수의사처방이 도입되면 누가 수의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처방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과잉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산업동물에서 항생제의 사용은 인체처럼 당연하니까 제도개선보다는 시설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인 대세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는 단순 억지 논리에 의한 것이지 과학적 증거를 수반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가 진료의 성행으로 전문수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침범당한지 오래 이고, 대학에서

도 대동물 임상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부족해 학문의 맥마저 무너지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의사의 처방권의 절대 확보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생계보장수단만 마련된다면 지금도 반려동물 대신에 산업동물의 임상을 선택하겠다는 6년제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많고, 현재 실력을 겸비한 것으로 생산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기존의 박사급 임상수의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수의사들의 수가 부족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생산자들이 적기에 받기 어렵다고 일부 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증거 적으로나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6년 10월에 일본의 월간 養豚界 잡지에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존가드 양돈 컨설턴트가 수의사 처방에 의한 채산성에 대해서 기고한 글과 2006년 Allen Leman강좌의 발표 자료의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항생물질의 신중사용은 국제적인 추세라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연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요지시의약품 지정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동물용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가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이 가축에 잔류하고, 축산식품을 매개로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의 건강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을 자제하고, 대상동물, 용법, 용량, 사용금지 기간 등 사용가가 지켜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다.

동물용의약품 중에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병원균에서 내성을 쉽게 생성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수의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요지시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요지시의약품은 수의사가 처방한 문서(처방전)와 지시서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요지시의약품으로서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백신 등이 지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단체들과 동물약품판매업자들이 수의사법에서 인정하는 임상수의사가 아닌 수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동물용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억지논리를 펴면서 요지시의약품의 지정을 반대하는 방글라데쉬보다 못한 후진국적인 제도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 진료와 수의학 비전공자들의 공헌 덕분에 생산현장에서는 플로르페니콜(florfenicol)을 비롯한 동물용의약품의 자돈집단 폐사를 비롯한 부작용 사례로 인해 생산업자와 판매업자간에 직접 클레임처리를 시도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수준이 도를 넘어선 것이 이미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의사처방권의 인정에 의한 항생물질의 사용절감이 감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한

항생제 사용절감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 수의사의 유익한 활용과 재산성 (존 가드, 2006)

1) 상담 상대로 이용

지금까지 관습으로 질병 발생시 치료를 위해 수의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정기적인 상담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유리한 지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농장이 많았다.

영국에서 질병의 치료를 주체로 수의사를 이용하는 지금까지 방식(수시방식)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방역을 주체로 방식(정기방식)에 대한 수의사의 비용을 비교했다.

연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의사에 대한 비용은 정기방식이 비용이 높지만 출하돈 1두당 약품비가 감소하고 사료 1톤당 수입이 증가한다.

또한 1두당 수의사 비용과 약품비의 합계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기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수의사 비용은 높아지지만 농장에서 출하량은 증가하고 약품 사용량은 감소한다.

2) 수의사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법

-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메모를 한다. 발생한 질병관리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고 잘 이해한다.
- 수의사의 전화 방문 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머리에 기억하든지 메모를 해 다음 방문시

에 상담한다.

- 문제점을 수의사에 설명하기 전에 농장등의 상사에게 먼저 보고를 한다.
- 병으로 쇠약한 돼지는 모두 표시를 해 두고 수의사 방문시 진료를 하도록 한다.
- 수의사가 다음에 방문할 때까지 실행한 모든 사항을 메모해 둔다.
- 농장 방문 시에 일의 양이나 충분한 시간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의사를 방문해 상담한다. 수의사는 자주 경영진과의 문제개선을 도와주고 모두가 최고로 흥미를 갖는 문제에 대해 공평한 제 3자 역할을 한다.
- 수의사가 돌아가기 전에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품의 주문이나 처방전을 잊지 말도록 한다. 또한 다음 방문까지 재고를 체크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다.
- 의견은 충분히 말한다. 단, 논쟁은 하지 않는다.
- 수의사가 돌아가기 전에 다음 방문일 예약을 확인한다.
- 메모에 기초해 상부에 현상을 보고한다.

결론

1) 대한 수의사회 용역보고서(2006)인 “동물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처방 의무화실시 영향평가”에서도 보듯이 EU를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성장축진용 항생제의 사용은 매년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수의사처방에 의한 치료용 항생제

의 사용량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가 진료에 의한 사료 첨가용 항생제의 오·남용방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 미국(2006)과 일본(2003)을 비롯한 선진축산국가에서는 성장촉진용 항생제(AGP)의 사용금지에 따르는 경제성분석에 대한 연구보고가 EU가 AGP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학술지(Agribusiness, Am. J Agr.Econ)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과제응모를 통해서 처음 시도될 정도로 학문적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3) AGP의 사용의 규제가 본격화되면 될 수록 이

로 인한 생산성의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착오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EU의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어, 과학적 근거가 아닌 감상적인 생각으로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사용절감에 비 생산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4) 현재도 생산자들의 생산성향상과 방역의 수준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실력 있고, 유능한 수의사들이 엄연히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수의사가 부족하여 양축가들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일부 인사들의 수의사처방권 인정반대에 대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해,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